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5. 16 선고 2017나3749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5. 16 선고 2017나37490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6. 27 선고 2016가단28535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변론 종결 2018. 4. 11

판결선 고 2018. 5. 16

제1심 판결 [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6. 27. 선고 2016가단28535 판결](#)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
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. 4. 24. 접수 제2333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을구
순위번호 1내지 4, 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
[민사소송법 제420조](#)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합계 357.70㎡로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
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면적 합계 142.93㎡보다 넓은바,이 사건 부동산 중 142.93㎡를 초과하는
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[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\(2014. 5. 14. 법률 제1224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\)](#) 제55조
저나항은 "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[제54조 제2항](#)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
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·전세권·저당권·임차권·가등기담보권·가압류 등
등기된 권리 및 [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](#)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
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",같은 조 제2항은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
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[도시개발법 제40조](#)의 규정에 의하여
행하여진환지로 본다."고 규정하고 있는바,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종전에 이
사건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이 사건
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,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덕식판사 배은창판사 김언지

[별지](#)